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신설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07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신설	3
※ 참고자료	12
1.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 기준	12
2.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 절차	15
3. 생태·자연도 등급 지도 현황('24년)	16
4. 생태자연도 작성 및 이의신청 절차도 및 처리현황	17
5.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 불법 유출 개요	18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최근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고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신청서 반려 등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상적인 이의신청 처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급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아울러,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64조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신설

현행법은 생태·자연도를 등급 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 자료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이의신청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등에는 등급 변경 고시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④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등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2. <u>이의신청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u> 3. <u>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u>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u>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u> 2. <u>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u> 3. <u>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u> ③ <u>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의 반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2.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신설>	제34조의4(생태·자연도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변경의 철회)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변경하여 고시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철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할 수 있다.</u> 1. <u>이의신청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 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u> <u>제34조의5(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의 대행) 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1. <u>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u> 2. <u>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u> <u>②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u> 1. <u>이의신청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u>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 (생략)	<u>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지 아니할 것</u>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6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64조(벌칙)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를 말하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에 따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태·자연도를 등급 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

구분	내용
1등급 권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예규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고시된 생태·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²⁾,

2)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753호, 2024. 9. 11)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자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

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에 자연환경조사결과(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및 동·식물, 식생, 지형 분야별로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참여)가 적합한 시기에 1개월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 구체적인 목차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4. 기타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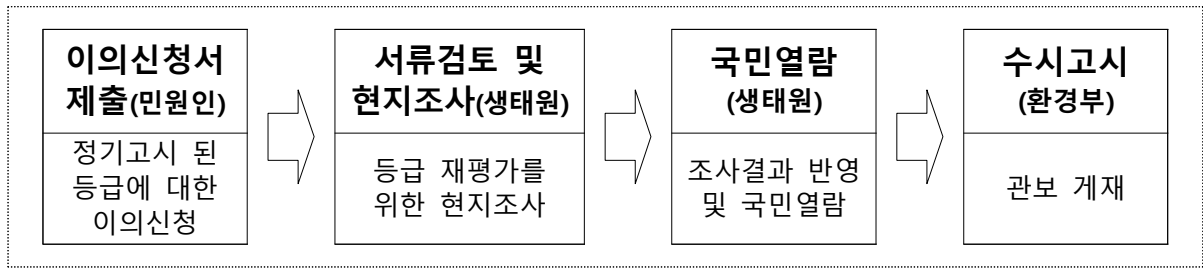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출처: 환경부

최근 국립생태원의 비공개 자료(자연환경조사 DB 등)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이의신청에 활용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시도한 사례 발생한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환경부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③ 이의신청 서류를 대행하여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출되지 않은 경우

⑤ 국립생태원장은 생태·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규정방식	환경부예규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												
이의신청자	<table border="1"> <tr> <td>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td><td rowspan="4">→</td><td rowspan="4">국립생태원장</td></tr> <tr> <td>시·도지사</td></tr> <tr> <td>토지소유주</td></tr> <tr> <td>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td></tr> </table>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립생태원장	시·도지사	토지소유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	<table border="1"> <tr> <td>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td><td rowspan="4">→</td><td rowspan="4">환경부장관</td></tr> <tr> <td>시·도지사</td></tr> <tr> <td>토지소유주</td></tr> <tr> <td>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td></tr> </table>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지소유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립생태원장												
시·도지사														
토지소유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지소유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														
이의신청 반려사유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이의신청 대행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의신청 서류 작성 대행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이의신청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구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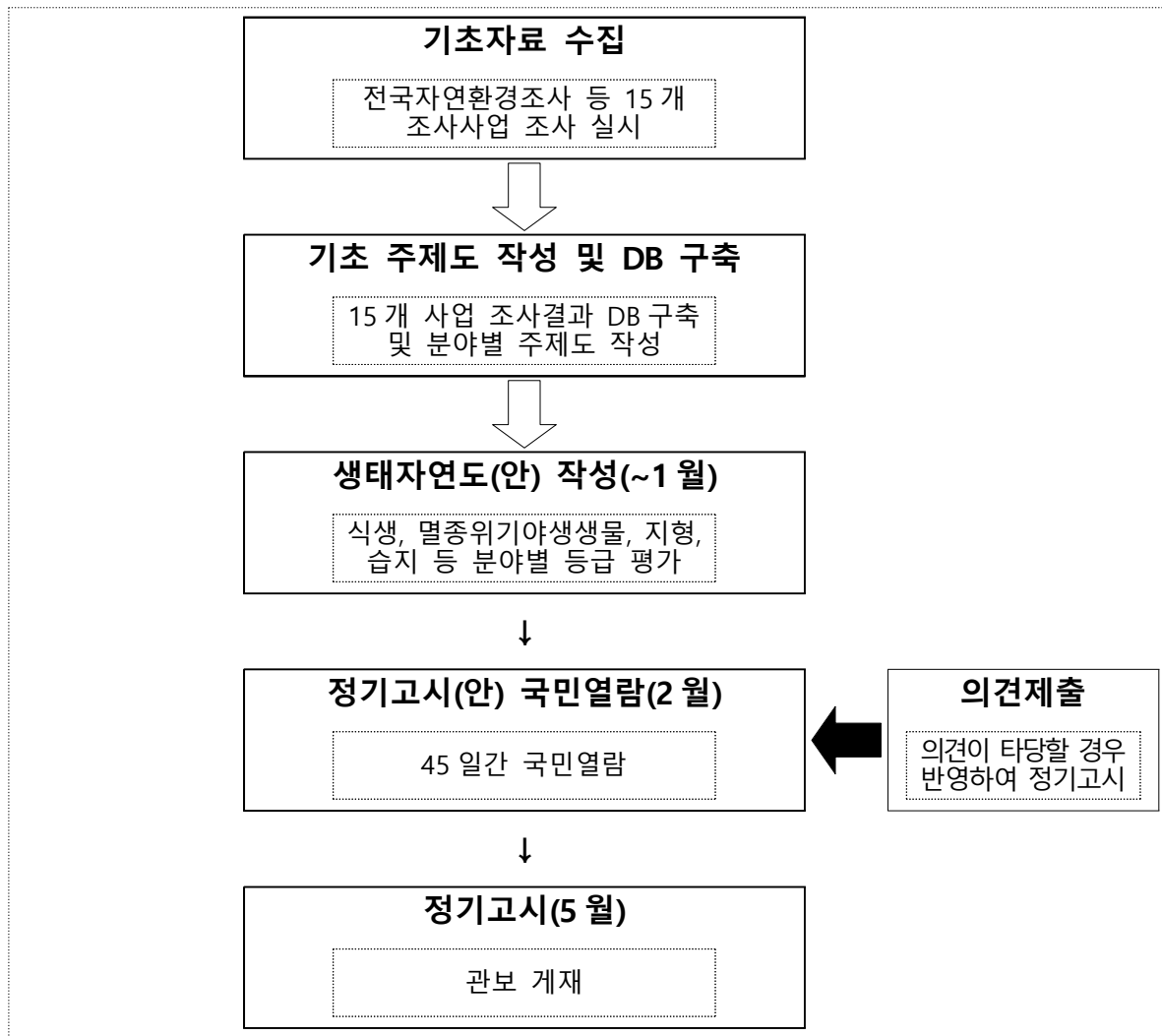
구분	지정 기준
1등급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2조) 제12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II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다. 국제협약 보호지역 1)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기구에 등록된 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 대상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습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이 2종 이상 번식 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습지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6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습지 다. 최근 5년간 철새가 2만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조류가 평균 4종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 라. 다목으로 평가된 습지의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 주변의 농경지(논, 밭)를 벨트화 할 수 있다. 다만, 벨트 내 권역은 2등급으로 평가하며 철새도래 현황, 현지 지형, 토지 이용 및 여건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바.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자연 하천습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도 내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2) 하도 내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하중도, 포인트바, 여울 등의 퇴적지형 3)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4)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퇴적지형 5) 과거에는 하천이었다가 유로의 절단, 구조운동 등의 결과로 현재는 우각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수생식물이 정착하여 있는 구하도 사.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II급 종이 2종 이상 서식하는 산지습지 아. 경제적·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산란장인 자연하천 자. 습지 중 하천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서 IV등급 또는 임상도 2등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차.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서 IV등급 또는 임상도 2등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카. 철새동시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여 습지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지 조사 또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 따라 평가권역을 소권역 등으로 세분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I 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2등급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호)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3조) 제13조(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작성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IV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임상도 2등급 이상 지역 2. 습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5종 서식하고 있는 습지 나. 최근 5년간 철새가 5천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 다.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 마. 습지 중 하천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하도 내의 퇴적지형은 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서 IV등급 또는 임상도 2등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바.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서 IV등급 또는 임상도 2등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Ⅱ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

	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3등급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3호)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4조) 제14조(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작성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별도관리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3호)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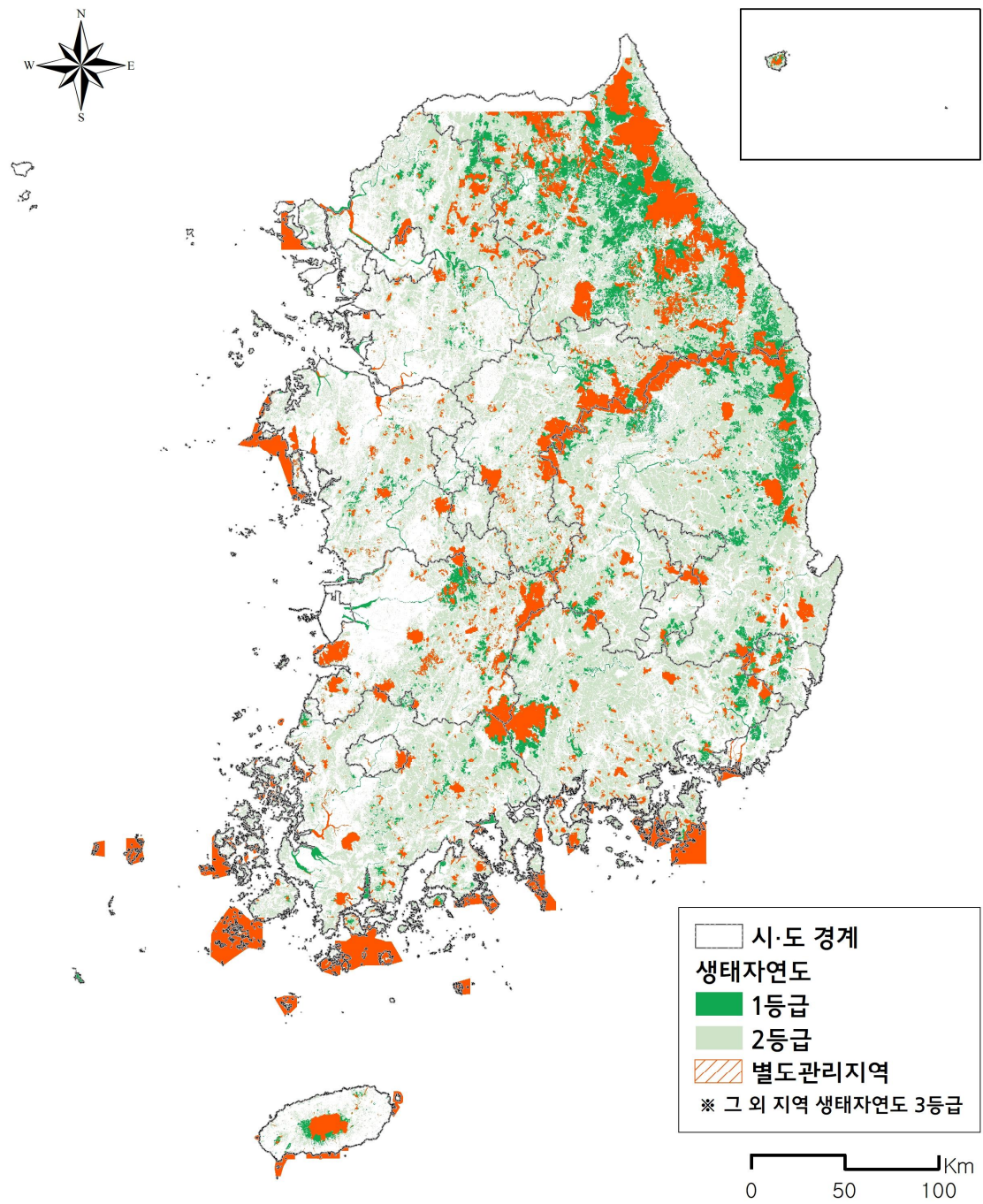
※ 출처: 환경부

2.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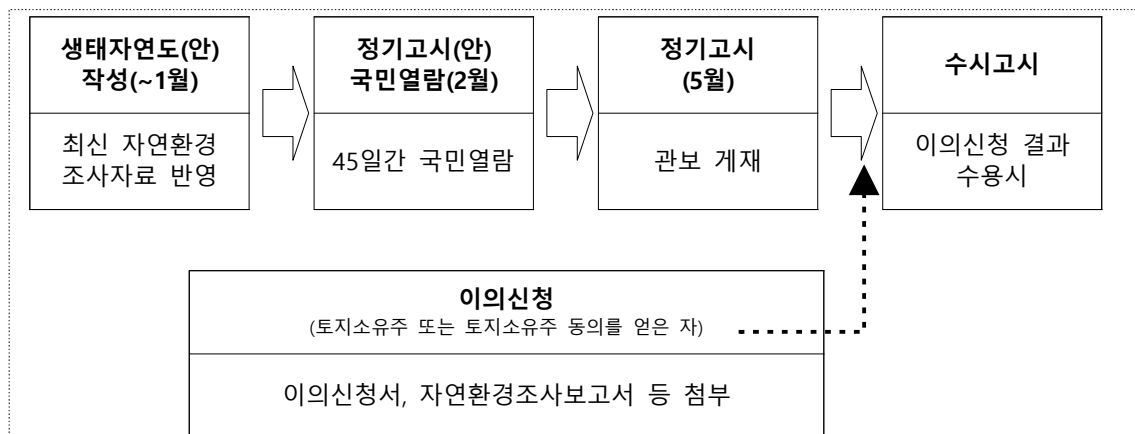
※ 출처: 환경부

3. 생태·자연도 등급 지도 현황('24년)



4. 생태자연도 작성 및 이의신청 절차도 및 처리현황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도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도	계	처리					취하	반려
		등급 수정				등급 유지		
		소계	상향	하향	기타 ¹⁾			
계	880 (100%)	619 (70.3%)	17	558	44	50 (5.7%)	55 (6.3%)	156 (17.7%)
2014	52	42	1	41	-	5	5	-
2015	42	33	1	32	-	4	5	-
2016	46	43	-	39	4	-	3	-
2017	85	63	-	50	13	2	5	15
2018	177	87	4	64	19	9	3	78
2019	107	75	2	73	-	5	5	22
2020	82	63	1	62	-	4	4	11
2021	131	93	5	86	2	10	6	22
2022	91	64	3	60	1	7	14	6
2023	67	56	-	51	5	4	5	2

1) (기타) 별도관리지역의 신규지정 또는 해제로 인한 등급 재평가

5.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 불법 유출 개요

1. 현황 및 경과

- (현황) 국립생태원 퇴사 직원이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사건 발생(업무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반출), 사건 수사 중

* (퇴사 직원) 이○○(40세), 4년 3개월 근무('19.8.1~'23.11.14), 생태자연도연구팀 공무원직

- (경과) 퇴사 후 S업체* 창업 → S업체에서 토지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생태원 제출** → 제출 자료에 생태원의 비공개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생태원에서 인지('24.5.8)

* △(업종) 제2종 환경영향평가, △(주요업무) 제2종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 토지소유주 의뢰로 아산시 궁화리 일대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1등급 → 2등급) 신청

2. 국립생태원 조치 사항

□ 수사 의뢰

- (경과) 5.13~5.27 법률자문(정부법무공단) → 6.10 법률 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지평) → 6.12 충청남도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 수사 중

○ 법 위반 사항

- ①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기위해 생태원의 비공개 자료인 생태자연도 GIS-DB 유출(10년 이하 or 5억원 이하)
- ②업무상 배임(「형법」제355조제2항) : 사무 처리 자가 그 임무(퇴직 시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서약)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10년 이하 or 3천만원 이하)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사건 고발과 별개로 이의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 하향 조정('24.8.23, 당초 1등급 8,985㎡ → 수정 2등급 8,985㎡)